

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사업장명칭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	전화번호	
	시험실소재지	전화번호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의뢰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. 시설장비 명세 3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.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에산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